

의안번호	2210481
의 퇴 인	박수현 의원
회 답 일	2025. 5. 16.
추 계 번호	25F286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
적용기한 10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5년 12월 31일로 10년 연장함에 따라, 법인세수는 2027년 290억 원, 2036년 290억 원 등 2027년에서 2036년까지 10년간 총 2,896억 원(연평균 290억 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: 법인세, 2027~2036년

(단위: 억 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2032
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 (안 제8조의3제1항)	-290	-290	-290	-290	-290	-290
	2033	2034	2035	2036	누적	연평균
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 (안 제8조의3제1항)	-290	-290	-290	-290	-2,896	-290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의3제1항 (상생협력을 위한기 금출연등에 대한 세 액공제)	○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.12.31.에서 2035.12.31.까지 10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35.12.31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 및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8조의3제1항 (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제하며, 세수효과는 신고 및 납부시기에 2027년부터 발생
-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0~2024년 감면실적의 평균이 향후 5년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「조세지출예산서」 상 최근 5년('20~'24) 세액공제 실적은 연평균 290억 원
- 다만, 안 제8조의3 각 항별로 감면실적의 구분이 불가능하여, 대부분의 감면실적이 제8조의3제1항에서 비롯된다고 가정하여 추정
 - 국세청에 따르면, 법인세 신고서식에 공제제도의 항목별 구분이 없어 실적의 항목별 구분이 불가능한 실정
 - 이를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실제보다 과다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

- (제도개요) 내국법인이 대·중소기업 및 농어업인과 상생협력을 위하여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에 대한 일정 비율만큼 법인세에서 공제
 - (개정연혁)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2010.3.31. 제정된 규정으로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대한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
 - 2011년 도입: 내국법인의 신용보증기금 등의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출연금의 7%를 법인세에서 공제
 - 2016.12.20. 일부개정: 출연금에 대한 공제율 10%로 상향
 - 2019.12.31. 일부개정: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의 출연금을 공제대상에 추가
 - (현행규정) 내국법인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%를 각각 법인세에서 공제
- (감면실적) 「조세지출예산서」상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감면실적은 2020년 202억 원, 2024년(잠정치) 295억 원으로 연평균 290억 원 수준
 - 동 규정은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의 실적에 따라 감면액 변동이 큰 편

[표 2]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감면실적: 법인세 및 소득세, 2020~2024년
(단위: 억 원, %)

	2020	2021	2022	2023	2024(잠정) ¹⁾
법인세	202	212	329	408	295
소득세	0	0.8	0.5	0.5	0.2
합계	202	212.8 (5.3)	329.5 (54.8)	408.5 (24)	295.2 (△27.7)

주: 1) 「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」상 2024년 감면액은 2024년 상반기까지 신고한 조세감면액을 바탕으로 이전 연도의 진도비를 적용하여 추정한 숫자임

1. ()안은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대한 감면실적의 전년대비 증감을

자료: 대한민국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

나. 추계방법 및 추계결과

□ (추계방법)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 2020~2024년 연평균(290억 원) 감면실적 수준이 향후 5년간 유지될 것으로 가정

- 2020~2023년까지 감면실적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전년대비 증가율의 변화가 크고, 2024년 잠정치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감소(△27.7%)할 것으로 전망되어 증감추세를 알 수 없으므로 연평균 감면액을 기준으로 추계
- 국세청에 따르면, 법인세 신고서식에 공제제도의 항목별 구분이 없어 실적의 항목별 구분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제8조의3에 따른 감면실적이 같은 조 제1항에서 비롯된다고 가정하여 추정
 - 이를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실제보다 과다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

□ (추계결과)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5년 12월 31일로 10년 연장함에 따라, 법인세수는 2027년 290억 원, 2036년 290억 원 등 2027년에서 2036년까지 10년간 총 2,896억 원(연평균 290억 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: 법인세, 2027~2036년

(단위: 억 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2032
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 (안 제8조의3제1항)	-290	-290	-290	-290	-290	-290
	2033	2034	2035	2036	누적	연평균
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 (안 제8조의3제1항)	-290	-290	-290	-290	-2,896	-290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장설희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설희	02-6788-4836	shjang@assembly.go.kr